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64-01

모두의 존엄을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항 안내서
Hate Speech Counter Guide



모두의 존엄을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항 안내서
Hate Speech Counter Guide

안녕?
저는 204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요원X
라고 해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목차)))

안내서를 펴내며_06

혐오표현 바로 알기_08

혐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_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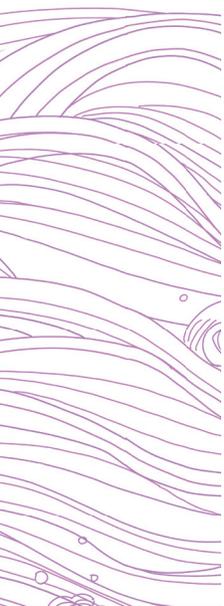
여성혐오의 실태와 대응_32

우리는 언제까지 장애를 부끄러워할 것인가?_44

재난피해자 혐오, 그 극복을 위한 시론_52

이슬람혐오를 인종주의로 이해하기_64

성소수자 혐오 실태와 대응_76



혐오표현 대항 안내서를 펴내며

인류의 역사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해 온 역사이고, 그러한 차별을 반성하고 철폐하고자 노력해 온 성찰의 역사이다.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타민족, 성소수자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 집단을 열등한 존재, 무가치한 사람, 위험하거나 오염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한 흔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의식·무의식적인 사고구조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이러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부추기는 행위이다. 그것은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에 대한 내면의 감정이나 인식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뿌리가 역사적 혹은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발화되고 확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기존의 차별을 다시 확인하고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차별에 바탕을 둔 배제와 억압의 사회구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혐오는 다수의 의견처럼 선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맞서기 위한 노력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이러한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혐오표현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자는 혐오표현을 이해하고, 그에 맞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혐오표현 바로알기



1 혐오표현의 개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는 2015년 ‘혐오표현¹ 대응 툴킷’(‘Hate Speech’ Explained A Toolkit 2015 Edition)을 펴냈다. 아티클19는 가장 먼저 이 툴킷을 통해 ‘혐오표현’을 확인하는 방법과,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혐오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툴킷은 ‘혐오표현’의 ‘혐오’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혐오(Hate)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실제로 가지거나 혹은 가진 것으로 인식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증오의 감정. ‘혐오’는 단순한 편견과는 다르며,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함. ‘혐오’는 어떤 감정상태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표출되는 행위와는 구별됨.

표현(speech) 내면적인 어떤 견해나 생각을 외부의 청자에게 전달하는, 견해나 생각을 전하는 모든 표현.. 서면이거나 비언어, 시각, 예술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며, 인터넷,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통해 배포될 수 있음.

1 <혐오표현 리포트>(국가인권위원회, 2019), <혐오표현 해설>(아티클19, 2015),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유엔, 2019) 자료 내용 발췌

그리고 위 두 가지 기본 요소에,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이 보호되어야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의 내용과 어조, 초래된 해악의 정도는 어떠한지, 굴욕적이고 인간 이하로 만드는 표현 자체로 해악을 끼치는지 또는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거나 임박한 해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혐오표현’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엔은 2019년 6월18일 혐오 표현을 ‘종교·민족·국적·인종·피부색·혈통·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해 말·글·행동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혐오 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2021년 7월 21일 유엔총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 간, 문화 간 대화와 관용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2년 6월 18일을 1회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선포했다.

유엔의 ‘혐오 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2019. 6.)과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2020. 9.)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말, 문서 또는 행동”의 어떤 형태이건, ① “모든 종류의 소통”이며, ②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고, ③ “정체성의 요소”를 언급한다.

이때 정체성은 유엔 행동계획에서 언급한 종교, 종족, 국적, 인종, 피부색, 조상(민족), 성별 이외에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데, 언어, 정치적 및 기타의 의견, 신념, 국가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선주민 기원이나 정체성을 포함한 출생 기타의 신분, 계급(caste), 장애, 건강상태, 이주민 또는 난민 신분, 거주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간성(intersex)신분, 연령, 색소결핍증 및 HIV 감염 상태 등과 같은 공인된 정체성 요소를 포괄하며, 오래 계속된 분쟁의 당사자,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로부터 배제 또는 주변화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했다. 혐오표현 리포트는 국제인권조약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혐오표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혐오표현을 ①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②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에 근거하여, ③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의 선전, 선동 등의 표출 행위를 통해, ④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개인):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 부정적 관념과 편견
- 언동 등의 표출 행위: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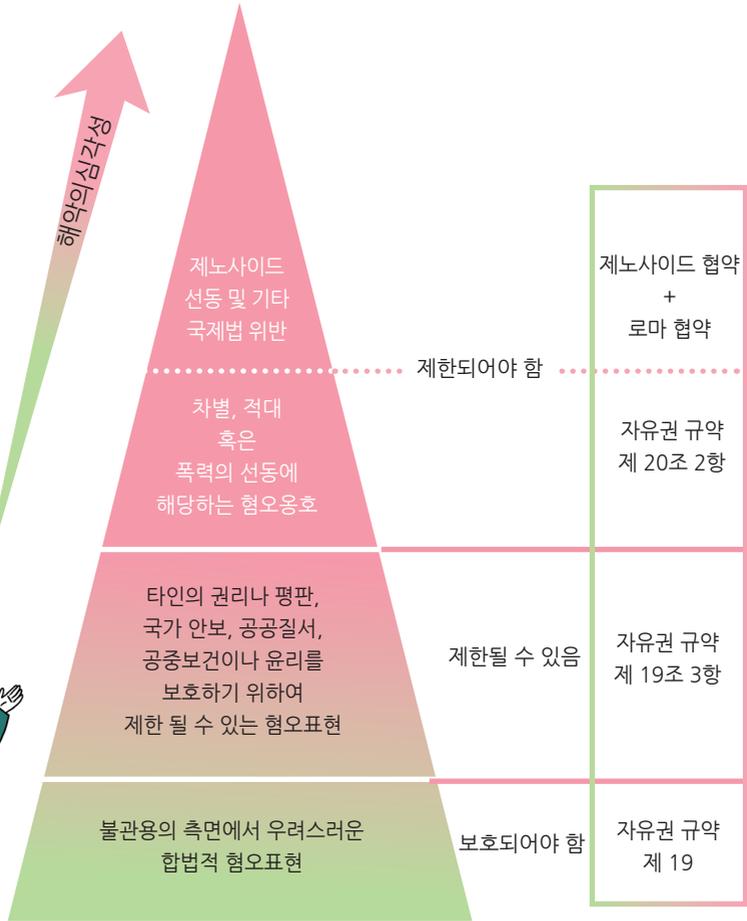
2 혐오표현의 수준

혐오표현은 제한되어야 하는 수준(최고 수준), 제한될 수 있는 수준(중간 수준), 법 테두리 내의 수준(하위 수준)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때 **최고 수준의 혐오표현**이란 “집단살해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을 구성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로 국제법상 금지되는 표현을 말한다.

중간 수준의 혐오표현이란 금지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금지, 즉 사회적 규제가 (a)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b)정당한 목표(예컨대 타인의 권리 존중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를 추구하고 (c)민주 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성을 갖춘 때에만 가능한 표현이다.

끝으로 **하위 수준의 혐오표현**이란 예컨대 공격적이고 충격적이거나 혼란스러운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법적 규제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불관용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국가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표현을 말한다.



3 혐오표현 수준(심각성) 평가

혐오표현은 그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및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혐오표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은 ‘리바트선언’²에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특정 국적, 인종, 사상, 종교에 근거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6가지 기준의 활용을 제안한다. 이때 6가지 기준이란 표현된 상황(맥락), 표현한 사람(화자), 표현의 의도, 표현의 내용과 형식, 표현의 정도와 규모, 해악의 즉각성을 포함한 개연성 등을 말한다. 이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일뿐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6가지 기준을 확인을 위한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² ‘리바트선언’ 2012. 10. 리바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유엔이 채택한 ‘차별과 적대,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국적, 인종, 종교적 혐오를 금지하는 라바트 선언’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가. 혐오표현이 표출된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맥락

- a. 진행중인 분쟁이 있는가 또는 대상집단에 대한 폭력사건들이 있는가?
- b. 법률이 대상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는가?
- c.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입법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들과 일치하는가?
- d. 미디어는 대상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조금이라도 한다면)
- e. 미디어는 독립적인가?
- f. 임박한 선거가 있는가?
- g. 선거운동에서 정체성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 h. 혐오표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나. 화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 청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 a. 화자는 사회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b. 그들이 민족 지도자, 정치인, 공직자, 종교 또는 신앙 지도자인지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 c. 사회에서 그들의 평판과 지위는 무엇인가?
- d. 대상집단과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혈오표현 수준(심각성) 평가

다. 화자의 의도(마음상태)

- a. 화자는 보호되는 속성들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 b. 화자-청중-대상 집단이라는 3각 관계가 존재했는가?
즉 화자가 대상(피해)집단에 대하여 청중을 선동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선동의 경우에만 한함)
- c. 화자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단순히 부주의 때문이었거나 또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인가?
- d. 화자의 소통은 품위가 없었는가? 즉, 판단 부족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라. 표현의 성격과 유형

- a. 그 표현은 어느 정도 도발적이고 직접적이었는가?
- b. 그 표현에서 전개된 주장들의 형식, 방식 및 성격은 어떤 것이었나?
- c. 그 표현에서 전개된 주장들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있었는가?
- d. 그 표현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 e. 그것은 예술적 또는 학문적 표현이었는가?

마. 표현의 범위

- a.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그 표현은 얼마나 공개적이었는가?
- b. 그 표현은 얼마나 널리 유포되었는가?
- c. 그 표현에 노출된 청중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는가?
- d. 그 표현은 오프라인 그리고/또는 온라인으로 유포되었는가?

바. 해악의 위험 정도

- a. 화자의 소통이 대상집단에 대한 청중의 실제행동을 선동하는데 성공할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했는가?(선동의 경우에 한함)
- b. 그 표현으로부터 해악이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했는가?
(예컨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해악
또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해악)
- c. 그 해악은 다른 사람들보다 대상집단(예컨대 여성, 아동 또는 청소년) 내의 특정한 개인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
- d. 그 해악은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까?

4 혐오표현 수준별 대응 방법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그 수준을 정하였다면, 혐오표현의 수준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집단살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에 대한 선동을 위해 증오를 고취시키는 최고 수준의 혐오표현에 대해서 유엔은 형사, 민사, 행정적 제제가 필요하며, 더하여 사회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 및 비차별의 권리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환경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평등 및 비차별의 권리의 행사가 가능케 하는 환경을 위한 조치 또는 수단

- a. 국제인권규범과 기준들에 합치하는 차별금지 입법과 그 이행
- b. 불쾌한 표현과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c. 기자, 여성인권옹호자, 활동가들, 시민사회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인권옹호자, 기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 확대
- d.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확대
- e. 공민적 공간의 보호
- f. 차별을 지지하는 발언을 피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모든 혐오표현에 대해 신속하게 반대하고, 폭력이 사전적 도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차별이나 불관용을 지지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말을 회피하는 정치적 및 종교적 지도자들, 학자들 기타 공적 인물들의 공개적 행동



폭력의 위협을 담고 있으며, 편견에 기반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는 중간 수준의 혐오표현의 규제는 그 규제가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및 비례성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규제와 함께 중간 수준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공공정책 조치들의 채택

- a.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위한 공공정책 체제 마련과 유지
- b. 민족과 집단의 폭넓은 다원성 이해를 위하여 다양성의 적극적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으로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신장하며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 c. 공직자, 정치인, 교사, 군대, 경찰 및 사법부의 구성원들, 법률전문가 및 의료전문가들, 소수자의 대표들, 공동체 지도자들과 종교 및 신앙 지도자들과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및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에 관한 훈련
- d. 기자 및 미디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평등 및 비차별의 권리에 관한 훈련
- e. 과거의 혐오에 기반한 잔혹범죄들에 대한 공적 인정
(기념물, 공공부지의 헌정, 관련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등)
- f. 시민의 비판적 사고, 사회적 및 정서적 기술과 책임성 있는 참여에 대한 인식 확대(지구적 시민성 교육과 미디어 해득력 및 정보 해득력을 위한 도구의 활용을 포함)

끝으로, 공격적 표현, 불쾌한 표현, 차별이나 폭력의 선동에 이르지 않은 역사적 사건의 부정,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및 악의적 정보 등을 포함하는 하위 수준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금지된다. 다만 이러한 표현들은 그 표현에 대한 반대의견의 표명, 사실관계를 밝히는 표현, 정보의 근거를 따져 묻는 질문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재생산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 표현(혐오표현에 맞서는 표현)을 위해서는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증진, 그 수단

- a. 시민사회 활동(예: 인권교육, 동료간 학습, 혐오표현 감시와 보고, 그리고 피해자/ 대상들의 증언 기회 제공 등)
- b. 국가와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종교 지도자들, 신앙 행위자들 및 예술가들) 사이에 형성된 연대와 실천
- c. (내용과 인력의 다양성을 가진) 독립적이고 다원주의적 미디어의 신장
- d. 혐오표현을 교정하는 데 관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적 노력
(그들이 투명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는 경우에 한함)
- e. 집단 간 대화와 이해를 신장하기 위한 조치
- f. 널리 다양성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아동,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지원

개개인의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공론의 장에 등장한 혐오표현에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혐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 혐오란 무엇인가

혐오, 혐오표현, 혐오범죄... 어느 순간 한국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15년 경부터이니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혐오라는 말은 혐오식품, 혐오시설 등 ‘싫다’는 뜻의 일상용어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었다. 개념상의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행히도 최근 10여년 동안 혐오/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문헌은 2019년에 각각 발간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와 유엔의 『유엔 혐오표현 전략과 행동계획(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이다. 이 두 문서에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결과를 총망라한 혐오표현의 개념이 담겨 있다.

이 두 문서에 기초하여 혐오표현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혐오표현의 대상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의 사유로 구분되는 집단이다. 예컨대, 성별로 구분되는 집단은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이 있고, 장애로 구분되는 집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적 지향으로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 때 혐오표현의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 집단이다.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이유로 여성이,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가 혐오표현을 당하고 차별을 받는다. 주류 종교가 아닌 소수자 종교의 신도들이,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혐오표현의 표적이 된다.



둘째, 혐오표현은 위에 속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그러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때 말이나 글이 아니라, 폭력, 살인 등의 기존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혐오표현이 아니라 혐오범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 둘은 이유나 대상집단은 동일하며, 다만 그 행위가 표현이면 혐오표현, 범죄면 혐오범죄가 되는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한다. 이것이 바로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특정 종교신자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비하하는 표현이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단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비하하는 감정을 내뿜은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은 비하당해도 좋고 차별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정말 순수하게(?) 비하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oo집단은 정상이 아니야”라고 말했다면, 실은 정상이 아니니까 다른 집단과 똑같이 대우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내포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말은 차별하는 행동으로 손쉽게 연결된다. 또한 혐오표현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말 순수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만 하는 경우가 있을까? “oo집단은 정상이 아니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생각에 다른 사람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상이 아니니 차별해도 좋다는 생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2 혐오, 우연이 아닌 현실

그렇다면 오늘날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게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는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기존의 편견이 강화되고 확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각각의 사람들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편견이 겉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확산되는 경우다. 그런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기는 기아, 경제불황, 고용불안 등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대형화재,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전쟁 중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사람들은 정공법 대신 손쉬운 해법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전염병을 이겨내려면 힘들고 불편해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 전염병에 맞서 싸워야 한다. 뻔한 얘기지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힘들지만 옳은 길보다는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이 더 편리하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다. 방역당국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손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앓을수록 그런 유혹에 더 쉽게 흔들린다. 중세 때 흑사병이 맹위를 떨치자 마녀사냥이 득세했던 것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때 인종적 혐오가 확산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미국, 일본, 북서유럽에 밀어닥친 구조적 위기가 인종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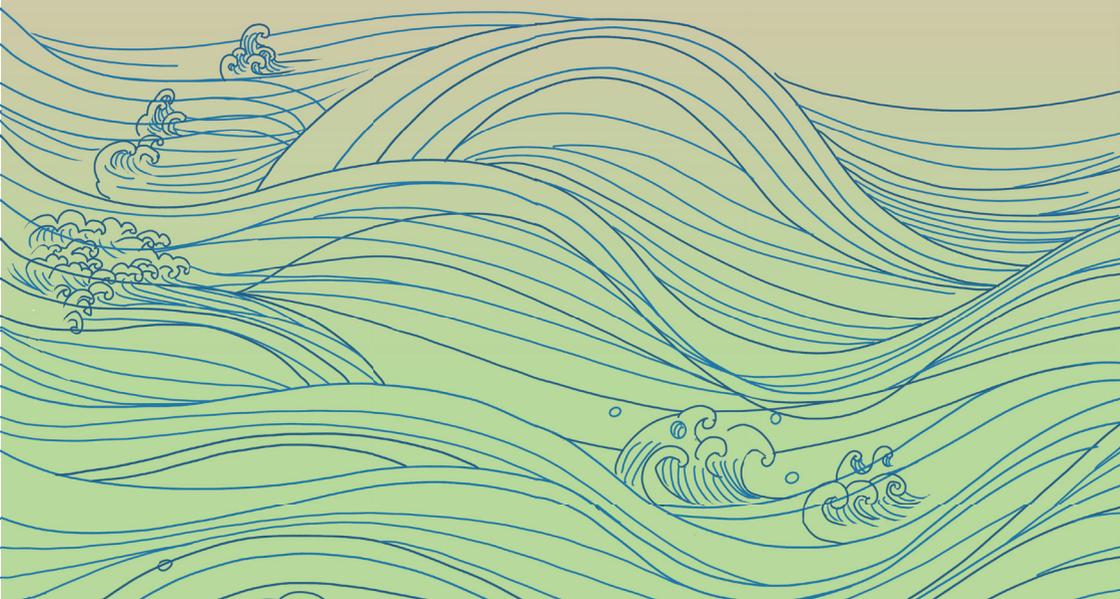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이 멈춘 뒤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던 시기를 틈타 혐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혐오를 낳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다거나, 동성애자들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된다거나, 중국인-조선족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거나, 여성정책 때문에 남성들이 고통을 받는다거나, 트랜스젠더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난다거나 하는 담론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문제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난을 퍼붓는 사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3 혐오에 맞서야 미래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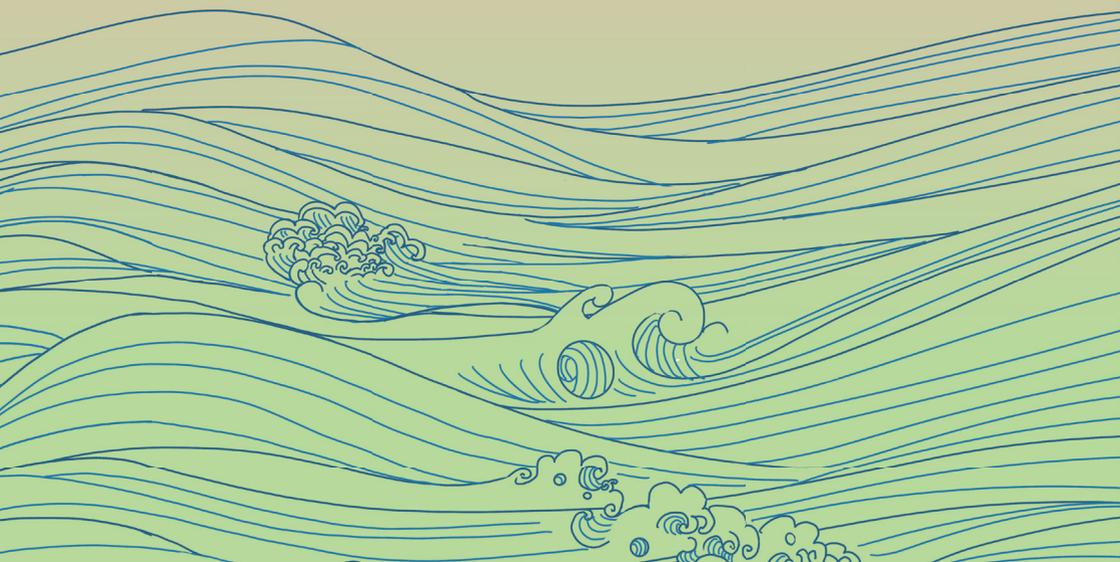
그렇다면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혐오표현, 차별, 혐오범죄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금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쉽게는 형법으로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심각한 특정 영역에 한정된 선택과 집중이 유효할 수도 있고, 법으로 금지하더라도 형법 이외의 행정적, 민사적 규제 등 다양한 방법이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금지보다 혐오표현이 발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화되더라도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한 집단이 자력으로 혐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거나, 제3자의 자율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어느 한 가지 방법을 배타적으로 택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유연하고 적절하게 동원해야 한다. 선명하고 강력한 방법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 부작용은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AI시대에 따른 고용불안정 심화, 재정 위기와 사회안전망의 부실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기 확대 등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게 없다. 해결이 난망할수록 혐오는 더욱 강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진정한 문제해결 대신에 어떤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퍼붓는 일이 유행처럼 번질 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혐오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는 이 혐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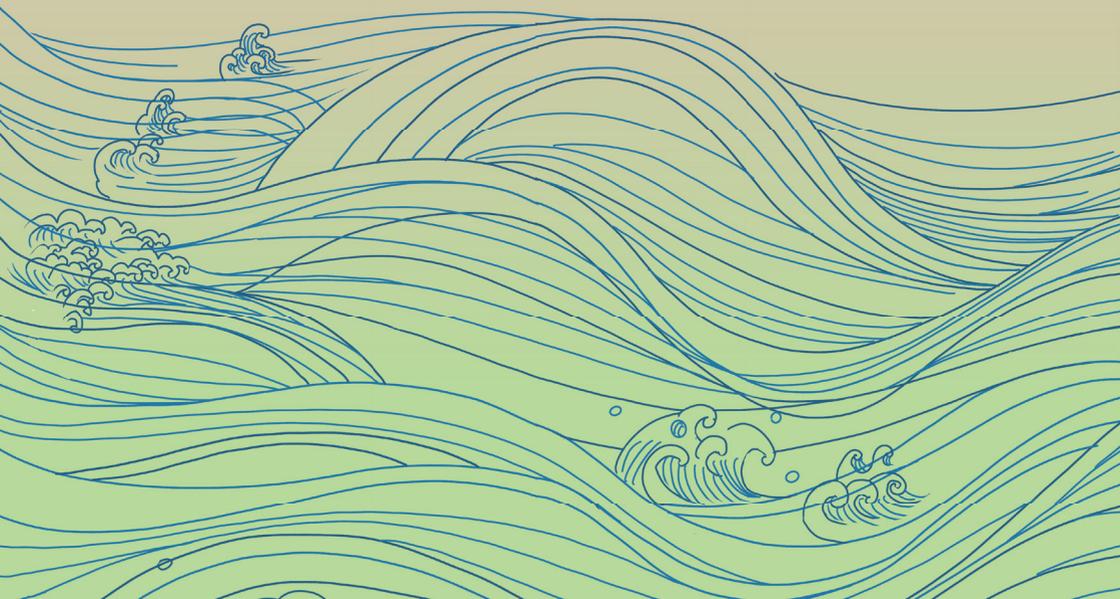


일상의
혐오와 차별
이야기



여성혐오의 실태와 대응

((((김수아, 서울대학교 교수))))



1

여성의 공적 참여를 막는 차별인 ‘여성혐오’

우리 사회의 혐오 현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게 되어 혐오표현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혐오표현을 빠르게 확산하는 도구이자,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특성상 별 문제의식 없이 이를 유희로 여기면서 사회적 혐오의 총량을 늘리는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부각된 혐오 현상에서 표적 집단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 80.4%, ‘특정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의 순으로 나타났다.¹

¹ 국가인권위원회(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여성혐오(misogyny) 논의는 혐오라는 개념을 ‘싫어하는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여성을 싫어하지 않는데 왜 혐오라고 하는가?”라는 반론을 종종 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규제에서도 개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 표현을 혐오차별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규제해 왔기에, 혐오표현이 저속한 언어로 치환되어 이해되는 현상도 나타났다.²

현재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여성혐오 현상은 여성에 대한 비하 혹은 모욕적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혐오 현상이 가부장제의 통치 원리로서, 가부장제적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작동하며,³ 모욕적 표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²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김민정(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문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방송통신연구>, 104, 70-102.

³ Manne, K. (2017). Down girl: The logic of misogy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성차별적 혐오표현(sexist hate speech)이라는 개념으로 여성을 향한 괴롭힘, 성적인 위협 등으로 나타나는 온라인 공간의 일상화된 여성혐오 현상을 개념화하였다.⁴ 여성에 대한 모욕과 비하의 효과가 성차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평의회의 정의에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의 표현에서부터, 적대적인 공격 표현을 포괄한다. 또한, 이미지 기반 성차별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문제를 여성혐오의 중요한 양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혐오 현상에 대한 연구들 역시 이와 같은 양상들을 포괄하여 여성 혐오를 정의하고 있다. 여성혐오 양상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것은 외모에 대한 비하와 모욕, 인종과 결합한 차별 표현, 성적 욕설, 신체에 대한 폭력, 성폭력 표현 등이다.⁵ 2014년부터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에 대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 온 서울 YWCA는 성차별적 이미지, 성적 도구화, 성차별적 고정관념, 외모에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정당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별적 인식이라는 6개의 범주를 제시하여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현상을 분석한다. 2022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표현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온라인 상의 성차별적 혐오표현 양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외모 비하 표현이 쓰이고 있었다.⁶

⁴ Council of Europe (2016). Background Note on Sexist Hate Speech. URL: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59ad42>

⁵ 김수아(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⁶ 서울 YWCA(2022). <2022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온라인커뮤니티)>. URL: https://www.seoulywca.or.kr/bbs/board.php?bo_table=board0304&wr_id=88

여성혐오 표현은 여성의 온라인 공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해악을 미친다. 혐오차별 표현이 만연한 게임 채팅 문화 때문에 여성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 온라인 토론 공간에서 여성들이 댓글을 통한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현상은 일견 여성 스스로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참여를 제한당한 것이며 이에 따라 여론은 왜곡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정치 뉴스 댓글 작성자의 76.0%가 남성, 24.0%가 여성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의 온라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이 나타났다.⁷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유네스코는 온라인 혐오표현이 여성들의 온라인 발화를 막는 문제를 언론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위축 효과’로 명명한 바 있다.⁸

⁷ 이재국, 유호선(2023). 20대 대통령 선거와 정치적 혐오표현: 뉴스 댓글 3천만건에 나타난 모욕과 멸시, 증오선동.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 발표문(2023.1.31.).

⁸ Posetti, J. et al.(2021). The Chilling: Global Trends in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ts. UNESCO.

2 여성혐오에 대한 대응과 한계

2015년 메르스 갤러리에서 만들어져서 온라인 상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미러링’은 서구에서 개념화된 ‘feminist digilantism’(페미니스트 디지털 자경주의)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인(Jane)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자를 지적하여 모욕하는 방식을 자경주의의 예로 들었다.⁹ 한국에서 개념화된 미러링은 온라인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혐오 문제를 패러디하여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러링 표현은 혐오 표현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으로 혐오표현에 대해 해당 공간을 떠나 버리거나 공적으로 발화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던 과거와 달리 여성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혐오표현의 논리 구조를 패러디하여 여성혐오 문제를 폭로하는 되받아 말하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기도 하였다.¹⁰

⁹ Jane, E. (2016) Online misogyny and feminist digilantism, *Continuum*, 30(3), 284-297

¹⁰ 김은주(2016). 여성 혐오(misogyny) 이후의 여성주의(feminism)의 주체화 전략. <한국여성철학>, 26,103-130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미러링 표현이 ‘남성혐오’로 명명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중들이 표현의 수위, 폭력성이나 모욕적 표현의 문제로 혐오표현을 생각하는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한 점이 있다.

대중들의 되받아 말하기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양가적 차원을 염두에 둔다면 혐오표현 대응에서 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의 혐오표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그리고 혐오표현의 활성화에 기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비판되고 있다. 현재 청년 세대가 자주 활용하는 대학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의 경우 혐오표현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청년 페미니스트 단체 유니브페미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에브리타임 혐오표현의 47%가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표현에 해당했다. 하지만 에브리타임 앱은 혐오차별 표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고, 혐오표현의 삭제 조치 등 대응 조치에서도 신속성과 실효성이 없다. 익명으로 운영되면서 신고에만 의존하여 삭제할 경우 페미니즘 주장을 담은 글이 삭제되고 여성혐오 표현은 남아 있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¹²

11 유니브페미(2020). <캠퍼스혐오표현 새로그침 가이드>. 유니브페미.

12 진실(2021.8.24.). “페미 글은 썰면서 혐오 글은 봐주는 에브리타임”. <일다>. URL: <https://www.ildaro.com/9128>

무엇보다 새롭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혐오표현을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나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다.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 차별적 표현이다. 이는 비하와 욕설 표현의 양태가 아닐 수도 있다. SNS상에 발언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에게 누군가 '네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라고 댓글을 게시한 경우, 직접적 폭력의 표현이 없다고 해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는 신상 공개의 위협이나 혹은 현실에서의 물리적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 체계는 이를 다루지 못한다.



현재의 정부 규제 및 플랫폼 대응은 현실의 차별과 연결되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내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욕설이 포함된다면 모욕죄로,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특별법 제13조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맥락에서 규제하고 있다. 단순히 저속한 말의 문제이거나, 성적 욕망과 관련하여 음란의 범주에서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현재의 규제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선량한 사회 풍속이나 건전성과 같은 것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혹은 차별의 구제, 민주적 참여의 보장 등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여성혐오가 공론장에서의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페미니스트가 스스로 모욕과 비하, 위협을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발화할 것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혐오표현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실효성이 있는 플랫폼 대응, 국가의 규제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3 더 많은 발화와 참여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더 많은 발화와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다. 여성혐오 표현이 만연한 온라인 세계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정부 및 플랫폼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규제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례는 물론, 해외 연구에서도 성적 대상화 표현과 여성혐오를 가깝게 보고 규제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기술기반 규제가 대안처럼 이야기되지만 이 경우 젠더 기반 혐오표현보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삭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 역시 논의되고 있다.¹³ 이는 현재의 공격 규제 정책 및 플랫폼의 자율 규제 정책이 성차별의 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표현의 지속성과 같은 기준으로 혐오표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¹³ Posetti, J., Bontcheva, K. & Shabbir, N,(2022). The Chilling: assessing big tech's response to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ts.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3044>

따라서 시급한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맥락을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의 표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의 변화를 전제한다면, 개인의 시민성 역량 강화 역시 여성혐오 대응의 한 방법이다. 조 스미스(Jo Smith)는 여성혐오 표현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위축 효과를 경험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역시 나타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¹⁴

이는 시민들이 혐오표현을 내버려 두는 것이 타인의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적극적 지지자(upstander)’라는 개념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강조한다.¹⁵ 이는 디지털 시민성의 주요 영역이며, 반차별을 근간으로 하여 참여를 장려하고,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역량과 관련된다. 여성혐오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밈(meme)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문화 장치들에 대한 인식, 여성혐오가 차별행위라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¹⁴ Smith, Jo(2023). Responding to, resisting of, and regulation of online gendered hate in England and Wales. 서울대 인권센터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 (2023.1.12.).

¹⁵ <https://www.esafety.gov.au/young-people/be-an-upsta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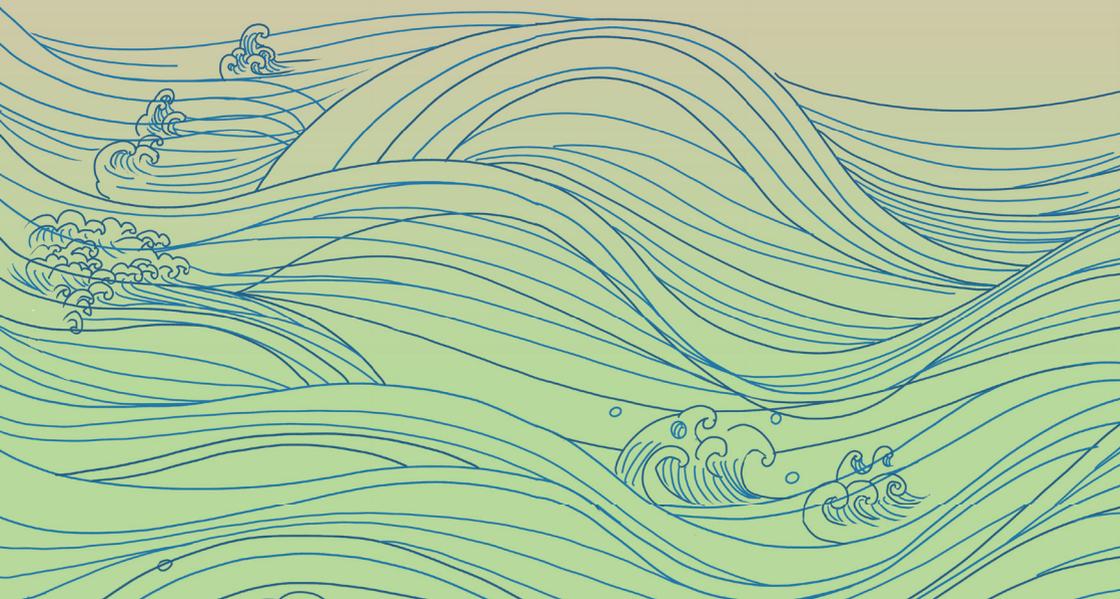


더 많은
발화와 참여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키워나갑시다!



우리는 장애를 언제까지 부끄러워할 것인가?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



1 장애라는 이름이 부끄러운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는 인사말을 할 때가 있다.

“생각보다 참 밝으시네요.”

한참 어릴 때는 명절 때마다 나이가 한참 높은 친척들이 내 몸을 어루만지시며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시며 같이 죽으러가자’ 고 말씀하시고는 했다. 40여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런 말들이 소름끼치게 두렵고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저 관용구는 분명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 아닐진대, 왜 그때 사람들은 장애인에 효도라도 하려면 빨리 죽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왜 그런 슬프고 잔인한 저주를 어린 당사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따뜻한 격려와 다정한 걱정처럼 여겨졌던 걸까?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저런 언어와 표현들은 반세기가 지났어도, UN인권 이사국이 되고 아시아 최초 국가 차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도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거나 비난받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권교육과 통합 교육이 법제화된 선진국이 되었어도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 때문에 일어난 일을 범죄화하거나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고 격리하라는 주장과 같은(이제 더러운 화장실 벽에 조차 잘 쓰지 않을)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말하고, 그 말들을 기사로 쏟아내어도, 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강력하게 제지받지 아니한가?

여전히 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지극히 극심한 불행으로, 심지어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여긴다. 그래서 비장애인 자녀였다면 사사로운 개인 대화에서조차 당장 아동 학대로 신고될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사사로운 감정 표현을 주요 언론과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장애인 당사자 조차도 장애를 드러내고 알리고, 국가에 알리는 것을 감추고 수치스러워하며 우리 사회는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기까지 한다. 이는 최근 심한 장애가 있던 20대 삼형제가 집에 감금당한 채로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서 너무도 잘 드러난다. 삼형제의 감금 사실을 매주 특수교사가 직접 목격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못했다.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진정한 차별입니다.”라는 표어처럼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려고 되레 장애혐오 표현을 동원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퍼뜨리는 것은 장애인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가장 대표적이다. 전형적인 순환 혐오이자 이중 혐오다. 혐오가 혐오를 낳고 전파하고 심지어 그 비판까지도 다시 혐오로 전염시킨다.



장애와 장애인은 사회가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이자 행정 임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과 말과 행동은 조선시대가 더 나았다고 평가할 지경이다. 제도와 그 제도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는 비장애인 일반 대중에게 손쉽게 장애인을 혐오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동시에 혐오표현 그 자체가 되었다. 그 혐오 표현을 부리는 사람은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느끼는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 죄책감을 안기면서 스스로를 혐오하는 대상보다 우월하고 정상이라는 일종의 안정감과 안심을 받는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즐거움까지 얻는다. 그래서 혐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나아가 작금은 소통의 도구로 혐오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많이 사용된다는 뜻은 혐오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2 “나만 아니면 돼!!”의 오해와 진실

장애 혐오와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의 욕설이 개인의 입에서 무심코 뱉어져 나왔더라도 당사자나 상대방이 직접 듣거나 대면했다면 엄연히 장애인복지법 8조¹ 위반의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를 제대로 연구하거나 처벌하여 사람들에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등 범죄 예방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적이 없다

과거 2000년 불결한 성관계가, 장애아를 낳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개그맨 이○○ 씨, 장애인 낙태는 어쩔 수 없다는 이명박 전대통령 그리고 2000년 초부터 게시판을 달궜던 초등학교들의 ‘애자’라는 놀림말의 사용, 공개적으로 아무데서나 장애인들을 모욕시키는 정치인들의 행동과 더불어 매주 장애인은 절대 함께 웃을 수 없는 개그프로그램² 들, 그 모든 문화를 전달하고 확산하는 언론, 결국 장애에 대한 혐오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전파되고 길러진, 사회적 양

1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법률 제19303호, 시행 2023. 9. 29.] 보건복지부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의 장애를 장애인 개인의 게으름이나 실수로 치부하고 그 자신의 장애가 인격으로 동일시됨으로써 자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엄연히 장애인 혐오이다.

육의 예견된 결과물이다. 장애인을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개인의 착한 일로 꺾은 일로 해석되고 표현되는 것이라면 이는 역설적으로 언제든 혐오로 오염될 양분이 될 뿐이다. 언제든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 상황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입장과 자세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권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단순 에티켓이나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단순히 매너라고 해도 여기면 사회적으로 비난받기도 하는데 장애인 혐오표현은 그런 비난조차 비껴간다. 감정적으로 혐오와 은유를 생산하는 것은 용서되어 버린다. 장애인을 사랑합시다라고 외치는 순간 사랑하지 말아야 할 혐오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장애인해교육이나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칭할 때도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다른 소수자 교육에서는 쓰지 않고 유독 장애인 인권교육에서만 쓰니 “인식개선”이나 “이해”라는 표현이 혐오의 지식이나 양분이 되기도 한다.

작년에 어느 드라마 때문에 자폐인과 같은 장애인에게 그렇게 관용적이고 통합적인 사람들과 2023년 올해 장애인에 대해 가장 인권적이고 전문적인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사의 직업적 어려움을 대중들에게 설득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장애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모멸적으로 강제 아웃팅했는가를 보면 자명할 뿐이다.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 관련 보도에서 외국의 100년 전 개인 교사로 폭력적으로 특수교육을 했던 설리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장애인 학생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만 머물라는 분명 국제 조약에 위배되는 주장이 마치 대단히 인권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언론의 모습, 마약사건 수사 보도에서 마약에 취한 모습을 틱장애에 비유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 혐오에 대해 둔감하고 비장애인 중심적인가를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밑바탕에는 요즘 각종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깔려 있다. “나만 아니면 돼” 이 말을 공개석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곤란함과 기회박탈과 차별을 공동체의 민주적인 규칙과 여론으로 착각하는 이런 인식표현을 대중들과 매체들이 당연시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각종 칼부림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은 한국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로 등장할 수 있는 사회 발전 단계의 시간대인 동시에, 우리가 타인의 삶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믿는다.

표현은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도구이자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제 우리는 반드시 장애를 겪고 장애인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인간 수명 시대에 산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장애인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시대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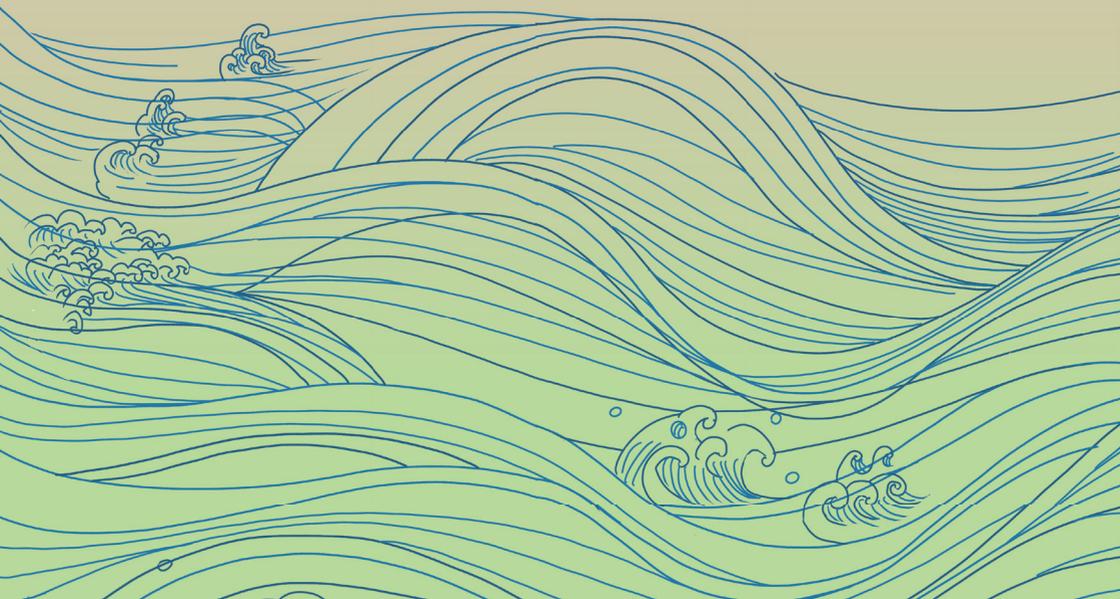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낡기라도 하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 지금 당장 장애인 혐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혐오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 후기 이덕무 수양서 <사소절(士小節)> 중에서

재난피해자 혐오, 그 극복을 위한 시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1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재난피해자 탓?

우리 정부가 재난이나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포기해 버린 최근에 와서 새로운 유형의 혐오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희생자와 그 가족 등 재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갖은 모욕과 폭언을 퍼붓거나, 조롱하고 비웃는 한편, 재난과 참사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제반의 행위들을 폄하하고 왜곡, 비방하며 심한 경우 집단적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그 양상 또한 가림이 없어, 재난이나 참사에 관한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의 형태로, 혹은 그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분향소나 집회 현장에서 막말과 망언을 퍼붓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립되고 치유하기 힘든 절대적 고통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재난피해자혐오는 종래의 혐오와는 외형을 달리한다. 후자는 성소수자, 이주민, 특정지역주민,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 등 이미 특정되어 있거나 구획가능한 집단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작동시킨 결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 재난피해자혐오는 그 집단정체성은 전혀 새롭게 구성된다. 재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식팔아 장사하는”, “놀러갔다가 죽은”, “배후세력이 조종하는” “석열이 터는게 목표”인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체성이 규정된다. 그리고 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



나 고정관념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그것을 유추하거나 확대하여 결부시킨다. 이태원참사의 경우에는 세월호참사의 경우를, 세월호참사는 다시 5.18광주민 주항쟁에 대한 소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중국에는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지역 혐오, 이념혐오를 재생하면서 재난피해자들을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식열이” “정부가 보상하나?” “180석” 등의 언술들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것은 혐오정치의 일환이자 그 대표단수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2 인권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있는 재난 대응

한마디로 현재의 재난피해자협오는 철저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정치성을 띤다. 정치적으로 가공되고, 정치적으로 동원된 허위의식의 집합인 것이다. 실제 5.18광주민주항쟁의 경우 “빨갱이”, “북한군”과 같은 왜곡발언들이 87년체제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탄축결기였으며 보수정파의 재생을 위한 전술이었다고 한다면, 재난피해자협오는 97년체제 이래 경제적 자유를 앞세운 일련의 자유화 전략의 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손희정의 말처럼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체제라는 자본주의의 실패”와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패”의 교차지점에서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의 외곽을 재난피해자협오가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오는 특정한 사람들을 호모 사케르 내지는 비체로 만드는 집단 작업이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든 그들을 ‘나와는 다른 존재’로 규정하여 비하와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회 바깥의 국외자로 축출된 이들을 되비춤으로써 체제의 압력에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가공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일종의 외집단혐오(out-group hate)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개체화되고 자유라는 명분하에 기댈 수 있는 공동체를 상실한 사람들이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체제의 명령으로부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혹은 공동선으로 구성되는 관계들로부터 탈각되도록 강제당하는 그들은 삶의 과정에 필수적인 관계를 찾아 혐오에 나선다. 달리 공동되는 사고나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에 특정한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찾아 공격함으로써 그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끝없는 수치심이며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이지만, 실제 그들 자신이 이 수치심과 무력감의 주체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혐오는 철저히 정치적이다.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권력,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시장절대주의의 요구에 철저히 그리고 맹목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구조를 온존시키고 보전하는 비-주체화, 비-시민화의 한 모습인 것이다.



재난피해자혐오는 여기에 또 하나의 정치성이 부가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를 은폐.엄폐하려는 정략적 고려가 삽입된다.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는 국가의 부재증명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두 참사 모두에서 정부는 무력하다 못해 비겁했다. 예방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참사가 필연이 되는 구조를 만들거나 방치하였다. 사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진실, 책임, 명예회복, 배상, 기억이라는 기본적인 해결 수단 그 어느 것도 외면하였다. 이런 무정부의 현실에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난피해자혐오는 이 지점에서 동원된다. 참사원인과 경과에 관한 진실을 묻어두고 그 결과만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가공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라는 사후과잉확신편향(hindsight bias)을 동원하며 진실과 책임의 문제를 묻어버리고, 정파적 유불리를 따지며 사후구복의 방안들이 정치화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갖 혐오의 발언들은 재난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언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다. 참사와 그 피해자들을 분리시키고 후자에게 인간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이 피해자들과 사회일반인들을 다시 구획하고 서로 단절시킴으로써 재난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무능하며 무책임한, 혹은 적반하장격으로 재난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정부를 사회적 비난과 책임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3 수단이 된 혐오

이렇듯 재난피해자혐오는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이고 결과추수적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억압에서 상실한 자아를 타인의 희생을 통해 그 편린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한계적 인물들의 몸부림이자, 체제의 문제를 혐오하는 자와 혐오되는 자의 갈등으로 치환함으로써 변혁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자 하는 구조의 위력이며, 직무유기에 빠진 정권의 안보를 지켜내는 반민주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흔히들 혐오의 피라미드를 말하며 혐오의 심리가 혐오표현을 거쳐 혐오범죄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말살의 반인도적 행위로까지 발전하는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혐오는 그런 도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마치 군사정권기에 지역혐오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듯이, 혐오의 뒷배에는 또 다른 권력- 정치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권력들-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혐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는 싫어서, 미워서 혐오하기보다는 다른 권력의 욕구에 봉사하기 위하여 혐오로 나아가는 시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혐오를 일삼는 유튜버의 목적은 돈벌이에 있으며, 혐오를 내뿜는 집회의 이면에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자리한다. 혹은 무한경쟁의 체제에서 자칫 패배하거나 탈락함으로써 생존의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처단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혐오를 소비하고 또 만들어낸다. 정치-자본-교회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권력들은 이 혐오를 방패삼아 국민 위에 군림한다.

그러기에 재난피해자혐오는 대항표현(counter-speech)만으로는 감당되지 못한다. “토론을 통해 거짓과 오류를 밝힐 시간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악을 피할 시간이 있다면, 적절한 구제는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다.”라는 브랜디스 대법관의 잠언은 대항표현의 필요성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의 입장을 담아낸 1969년의 브랜든버그 사건은 이 말의 무용성을 드러낸다. 당시 미국의 최대 인권단체인 전미인권연맹(ACLU)은 표현의 자유의 신성함을 외치며 인종차별주의집단인 K.K.K단의 시가행진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토론을 통해 그 해악을 극복하여야 한다며 재판에서 이들의 편에 섰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났다.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과 토론은 부단히 이어져 왔지만, 미국 사회의 권력구조는 여전히 백인에 편중되고 인종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혹은 도리어 강화되기도 하였다. 보기 나름으로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 법이라도 있었기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하물며 상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재난피해자혐오는 더욱 더 문제적이다. 대항표현의 힘은 거짓이 가려버린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자를 설득하거나 교육하는데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배합되든 관심 없이 듣는 이의 욕망에 따라 발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항표현이 별 의미 없어진다. 문제는 정치적 혹은 금전적 보상이고 관심은 그 보상이 이끌어내는 상품인 판국에서 혐오는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콘텐츠고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서사이다. 경우에 따라 토론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대항표현 그 자체가 혐오의 상품성을 강화하는 부자재를 이룬다. 탈진실(post-truth) 시대가 말하듯 대항표현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은 이런 상품화의 과정에서 의미를 상실하거나 혹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혐오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혐오와 사랑은 이렇게 모순율의 틀에 고착되어야 하는 개념은 아니다. 한 사람을 혐오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한 사람을 혐오하면서 그 혐오를 공유하는 어떤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확증편향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양극화가 대세를 이루는 이 시대에서는 혐오든 사랑이든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획된 내부자와 국외자의 변별을 따라 작동하기가 십상이다. 더구나 혐오하기에 국외자로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여야 하기에 혹은 적대가 필요하기에 혐오하는 현상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은 이 만델라의 경구가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함에 별다른 대안이 되지 못함을 지각하게 만든다.

4 혐오표현을 대하는 기준을 만들고 선언하는 일

물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는 대항표현이야말로 궁극의 대안임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 진보의 상상력은 토론과 교육 특히 공공선의 수준에서 발견되는 이 숙의의 노력들이 혐오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그 해악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책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진술의 대부분은 타당하다. 문제는 현실의 처방이다. 대항표현은 그 대항표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닿지 못한다. 그러한 숙의의 과정 혹은 이념이나 사상의 경합적(agonistic) 통합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과정 자체에 적대적인 사람들 말이다. “당신의 말은 다 맞으며 그 점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발언을 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혹은 그들에 의해 과다대표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대항표현을 침묵시킴으로써 기성의 권력을 견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대항표현의 별다른 힘을 갖지 못한다.

한편, 세월호참사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진실은 가려져 있고 책임은 희석되어 있다. 이태원참사 역시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분명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할 권리에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용하며(정보적 지지), 주변의 사람들과 그 아픔을 같이 할 권리가 포함되지만 여전히 이 권리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혐오는 이렇게 우리가 그 희생자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은폐, 엄폐의 기제를 담당한다. 여기에 대항표현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가공의 정보를 양산하는 혐오세력들에 어떤 대항표현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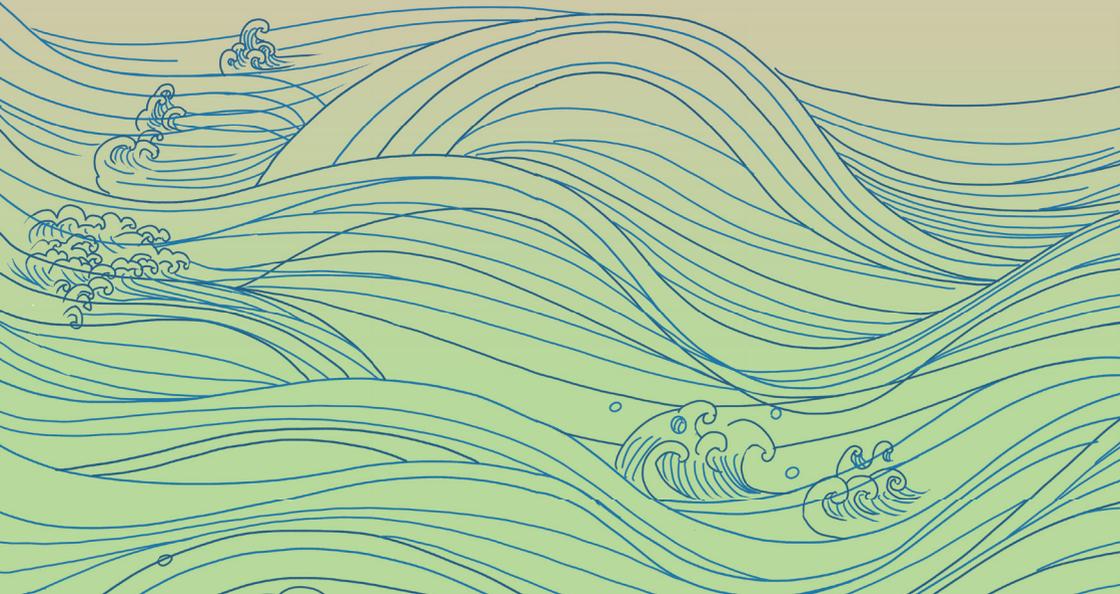
일각에서 검열의 우려, 국가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걱정이 있음에도 일정한 혐오표현을 법으로써 금지 내지는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굳이 형사처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규범적 금기사항이며 무엇이 규제대상인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작업, 즉 혐오표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출발점일 것이며,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사회 일각의 혐오표현이 정치과정을 통해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난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폄하, 비하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도 그 한 방편이 된다. 이런 금지규정을 바탕으로 집회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이 더 이상 권력추구의 수단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쿼어문화축제에 서울광장의 사용을 불허하는 서울시의 “합법적” 처분이 결코 합법일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 또한 법의 영역이다.

법적 규율이라고 해서 항상 검열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법은 공동체의 합의된 의사를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다. 법관료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법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장 국가권력의 강화로만 이어지는 것도 또한 아니다. 간바라 하지메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굳게 손을 잡고 ‘진정한 의미의 적들’을 포위하는 일이다”라고 단언하지만, 그 전선을 구성하고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만들어내는 법일 터이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민주공화국은 빛을 발할 것이다.



이슬람혐오를 인종주의로 이해하기

((((이소훈, 고려대학교 교수))))



1 인종과 인종주의

‘이슬람이 인종인가요? 왜 이슬람혐오가 인종차별인가요?’

‘무슬림이 다 아랍인종인 것도 아닌데 인종차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슬람혐오(Islamophobia)가 인종차별의 일종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위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슬람과 이슬람교인(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교에서 익히 들어 배운 내용에 잘 들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인은 학교에서 세계인구가 인종적으로 황인, 백인, 흑인 등으로 ‘구분’ 된다고 배웠는데, 무슬림은 ‘백인’이라고도, ‘흑인’이라고도 할 수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혼란의 이면에는 한국인이 ‘황인종’에 속한다는 단호한 믿음이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국사교과서는 한국인이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단언적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황인종’의 구분은 실제로는 유럽 제국들이 식민 지배를 위해 백인우월성의 깃발 아래 세계적 인종질서를 정리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효석은 마이클 키빅(Michael Keevak)의 책 《황인종의 탄생》

의 주장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인이 ‘황인종’으로 탄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다.¹ 황인종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이후에서야 서구인(백인)과 비서구인(유색인종)을 인종적으로 구별하고 서구인의 우월함과 비서구인의 열등함을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 포장하여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편견,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널리 퍼졌다. 마르코 폴로와 같이 중세시대 중국을 여행하며 동양 문명에 심취했던 유럽인 탐험가들은 동아시아인을 ‘백인(bianca)’이라 부르는데 비해, 근대 이후 백인제국들이 아시아 식민지배의 야욕을 드러내며, 자신과 동아시아인을 구별함과 동시에 이들의 열등함을 증명할 정치적인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동아시아인을 백인이 아닌 몽골인 또는 황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생물학적 차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우생학 등의 유사과학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 이효석. "한국인에 대한 황인종 개념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연구." 《한국민족문화》64 (2017): 145-167.



인종 구별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적인 것.



이처럼 인종과 인종주의는 그 사회의 시대적 특성에 따라 정의, 구분 및 발현 된다. 현 시대 인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사회적 구성물이며, 집단적인 상상의 결과라고 개념화한다. 더 나아가 특정 인종의 우월함이나 열등을 증명하는데 생물, 유전학적 근거는 없다는데 동의한다. 20세기 우생학 등의 유사 과학이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고통스러운 역사로 이어진 이후로 인종을 유전적으로 구분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인’, ‘흑인’, 그리고 기타 인종에 관한 구별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하지만 유사 과학의 역사는 인종의 개념적 정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인종 및 인종화는 (1)구별과 다름이 생물학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2) 인종적 우월성과 열등성이 생물학적인 특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3) 그 구별의 구조가 글로벌 질서의 논리와 연계되어있다. 인종화는 이 세 가지의 특징 때문에 타자화, 구분 짓기, 경계짓기 과정과는 다르다.

2 이슬람 혐오의 시작

이슬람혐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동과 그 근방지역 아시아인을 일컫는 ‘오리엔탈인’이라는 인종적 구분이 제시된것이19세기라고 관찰하는데, 이는 황인종이라는 개념이 생긴 시기와 비슷하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제국주의시대의 도래 이후 유럽백인제국이 이슬람세계를 식민지배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지식생산의 특징적 유형이 생겼다고 관찰하였다.²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명명한 중동 인근지역을 연구한 백인, 유럽인 학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관점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연구를 쏟아냈고, 그 내용은 아랍인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데다 거짓말쟁이이며, ‘잘못된’ 종교인 ‘모하메드교’를 신봉하여 미개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산된 지식은 이슬람세계의 열등함에 대한 증거로 쓰이며 유럽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기능을 했고,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전형은 ‘반(反)서구적인 것’으로 구성되었다.

2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5.

3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 22-49.

4 육주원, 이소훈.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아시아리뷰》 12.1(2022):33-65.



이러한 식민역사를 배경으로, 이슬람혐오는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한 1990년대 1차 걸프전 등의 이슬람과 서구세계 간의 분쟁 속에서 심화되다가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³ 이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이슬람 테러분자의 자살폭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이라크 침공 이후 등장한 IS(Islamic State)의 폭력적인 모습이 2010년대 중반부터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⁴

‘이슬람혐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45년 전, 사이드가 관찰한 이슬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은 현시대에도 유효하다.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근대성을 거부하며, 서구문명과는 동화되지 않고, 야만적인 가르침을 펼치는 쿠란을 신봉한다는 ‘진단’은 현시대 이슬람혐오의 주요 주장이다. 이것은 이슬람혐오가 9.11이후 시작된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란 시대적 특성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 몇 세기에 걸쳐 케케묵은 편견에 의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슬람과 테러리즘이라는 이미지는 경제, 안보, 외교 방면의 복잡한 역사적 구조를 ‘폭력적인 이슬람’이란 인종주의적 본질화를 통해 설명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이슬람세계의 복잡한 군사관계와, 소련 붕괴 이후 반복하여 발발한 서구와 중동 사이의 전쟁을 통해 보여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보다 서구 중심적이며 손쉬운 방법이었다.

3 백인우월주의의 침투

인종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백인우월성 (white superiority)’에 대한 명시적이고 내재된 표현, 전제, 신념이다. 꼭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대중매체나 보도 및 문화적 상품들이 유럽, 백인, 기독교적인 것은 문명적이며, 수준 높고, 선하고, 올바른 것으로 상정하고, 그 반대로 유색인종의 문화사회적 특징은 후진적이며, 낙후되고, 악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띄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인종주의의 관념적 영향은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노력으로는 완전히 떨쳐 버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당했다거나 하면, 분노와 함께 강렬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알수없는 이유로 ‘백인보다 한국인이 더 우월해!’라고 외치기 보다 ‘한국도 서구 나라들에 뒤지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 웬지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백인의 우수성에 관한 신념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를 향했을때엔 거부하기 쉬운 인종주의의 시각을, 반대로 타 집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스스로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셰린 라작(Sherene Razack)은 저서 《Nothing Has to Make Sense》에서 15세의 나이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되어 논란의 관타나모만 군사수용시설에 10년간 수용된 캐나다국적의 남성 오마르 카디르의 관타나모 군사재판을 비판한

다.⁵ 특히 그는 군검사가 채용한 정신과전문의 마이클 웰너(Michael Welner)가 사용한 백인우월주의 및 이슬람혐오적 주장의 오류들을 지적한다.⁶ 백인 남성인 웰너는 이슬람은 근대성을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구사회와 통합을 거부하며, 궁극적으로 유럽의 이슬람화를 도모하고 내전을 일으킬 것이며, 샤리아를 확립하려 지하드전을 계획하면서도 본심을 보이고 공격하기 전까지는 그럴듯 한 모습으로 자신을 숨긴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서구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온전한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이슬람을 믿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후 카디르는 캐나다로 환송되어 석방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이후 카디르가 관타나모 군사수용시설에서 당한 고문과 부당대우 등에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천만불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5 관타나모만 수용소는 미국에서 운용하지만 쿠바 영토인 관타나모만 내 미군 해군기지에 위치한 논란의 수용소이다. 테러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수용하며 고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Razack, Sherene H. Nothing Has to Make Sense: Upholding White Supremacy through Anti-Muslim Rac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2.

4 전세계에 우월하거나 열등한 인종은 없다

라작이 비판한 웰너의 주장은 한국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이슬람혐오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되는 ‘노고존’이 있다는 뉴스는 매우 빈번하게 보이는 가짜뉴스인데, 뉴스원이란 매체의 이00목사의 컬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알려져 있고 이목사는 이 기사에서 백인우월주의적 시각에 매우 우호적인 미국 보수언론 폭스뉴스의 관련 뉴스를 캡처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그가 캡처한 폭스뉴스는 프랑스와 영국에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고 공권력이 개입을 안 하는 노고존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후 프랑스 파리 시장이 고소할 뜻을 밝히는 등 강한 비판에 시달려서 매우 의외적으로 보도정정 및 사과방송을 했다.⁷ 이 외에도 이슬람에 ‘타하루시’라는 ‘강간문화’가 있다거나, 스웨덴이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여 ‘강간천국’이 되었다는 등, 유럽의 극우세력이 생성한 근거 없는 뉴스들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유포되고 있다.⁸

⁷ Robert McKey. Fox News Apologizes for False Claims of Muslim-Only Areas in England and France. New York Times, 2015년 1월 15일. <https://www.nytimes.com/2015/01/19/world/europe/fox-news-apologizes-for-false-claims-of-muslim-only-areas-in-england-and-france.html> (2023년 4월 9일 접속)

이러한 주장들에 힘을 주는 것은 한국사회에 내재된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선망이다. 한국에서 반다문화운동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총리 등의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한 인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이슬람혐오주의의 부상은 반이민자를 기조로 한 극우정치의 출현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무슬림 다수 국가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극우정당이 이슬람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과 어께를 같이 하였다. 비록 2018년 예멘난민과 관련한 사건들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이전부터 할랄푸드 산업을 반대하는 여러 움직임에서 그 전조가 다분히 보였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선진국’발 가짜뉴스와 반다문화주의, 이슬람혐오는, ‘선진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다문화주의를 표방한다’는 이전 주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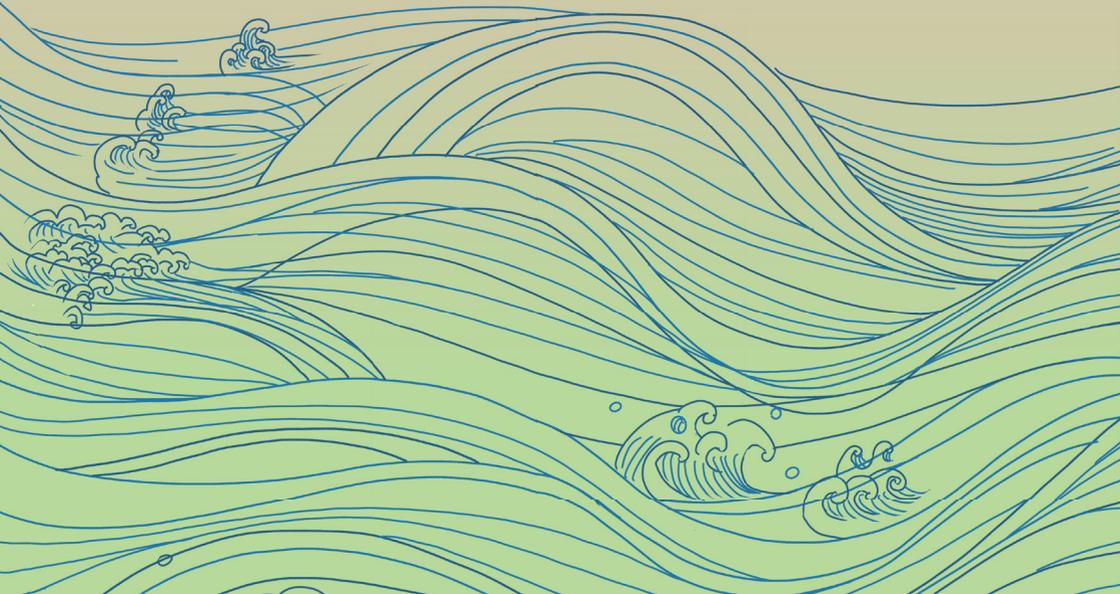
8 KBS 뉴스. [팩트체크] ‘강간놀이’하는 무슬림이 한국 이슬람화를 꿈꾼다? 2018년 7월 8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05899> (2023년 4월 9일 접속) ; 월간조선. 인터넷에 떠도는 ‘이슬람의 13교리’는 사실인가? 2018년 9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9100051> (2023년 8월 13일 접속); Abdelmonem, Angie, Rahma Esther Bavelaar, N Elisa Wynne-Hughes, & Susana Galan. “The ‘Taharrush’ Connection: Xenophobia, Islamophobia and Sexual Violence in Germany and Beyond”. *Jadaliyya*. 2016년 3월 1일. <https://www.jadaliyya.com/Details/33036/The-%60Taharrush%60-Connection-Xenophobia,-Islamophobia,-and-Sexual-Violence-in-Germany-and-Beyond> (2023년 8월 13일 접속)



이 때문에 필자는 ‘이슬람혐오를 지양하는 것이 선진적이다’라는 기조의 말은 오히려 인종주의의 역사성과 역동을 곡해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이것은 필자가 인종주의는 선진, 문명, 근대를 핑계로 삼은 제국주의와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며, 식민제국의 역사를 가진 유럽열강이 백인우월성의 근본에서 탈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비판인종학자들과 동의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은 무역, 투자, 방산등의 방면에서 이슬람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인구의 ¼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슬림이 앞으로 한국사회에 같이 살지 않게 된 일은 없다. 식민지배와 인종주의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인종주의의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론이 “전 세계에 우월하고 열등한 인종은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기를 희망한다.

성소수자 혐오 실태와 대응

((((이승현, 연세대학교 교수))))



1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의 성소수자 혐오 :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이나 입장을 묻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질문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혹은 일상에서 지인과 대화에서든 TV 토론회나 언론 기사에서든,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해본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성소수자 혐오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라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동성 간에 성적으로 이끌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므로, 사람의 성애적인 사랑의 감정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찬반은 판단으로서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욕구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나 욕구가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소수자 문제를 지칭할 때와 비교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첫 머리에 ‘[]을/를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다른 단어를 넣어 보자. ‘여성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노인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장애인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흑인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여성이나 장애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등이라고 사용하는 것도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를 의미한다. 그런데 성소수자와 관련하여서는 유독 동성애자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문제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과거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성소수자를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욕구(병리화) 가지거나,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범죄화)를 하는 사람들로 보고 치료하거나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병리화나 범죄화의 낙인은 근대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대표적인 범죄화의 역사는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 하였던 소위 ‘소도미법(sodomy law)’이다. 본디 소도미법은 교회와 기독교가 사회규범을 지배하던 중세 유럽 시기 자식을 가지는 목적이 아닌 성행위를 처벌하던 법으로, 피임이나 자위 등을 포함하여 종족 보존과 관련되지 않은 성행위를 죄악시한 것이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차 임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성 간 성행위나 자위는 제외하고 동성간 성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대표적인 병리화의 역사는 19세기 서구 정신의학과 해부학이 가부장적 사회규범과 결합하여 동성애자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로 분류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던 성역할이나 성별표현(복장, 두발, 행동 거지, 말투 등 남성성과 여성성을 드러내는 표현)에서 벗어난 사람을 성도착자로서 정신병리적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동성에게 성적 이끌림을 느끼는 현상은 ‘정상적인’ 이성애 발달되지 못한 질병이나 발달 정지로서 일종의 발육부진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한 정신과 의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나는 동성애자에 대해 편견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들은 의료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입니다.”¹

¹ Drescher, Jack 2015, Out of DSM: Depathologizing Homosexuality, Behav Sci (Basel). Dec; 5(4): 565-575.

이와 같이 동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구를 정신과 치료로 억제하거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여 교정하는 서구 국가들의 역사는 제국주의 시기를 거쳐 비서구국가들로 확산되었고, 소위 ‘동성애 반대’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동성애를 병리화한 것이 비과학적인 판단이었으며, 그로 인해 이루어진 폭력들에 대해 의학계의 사죄가 이루어 진지도 수 십년이 지났으나²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가 행해지고 있으며,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들도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법상 소도미법은 현행 균형법으로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교회공동체나 의료인에 의한 전환치료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²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 1990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서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선호장애’가 삭제되었다.

참고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혐오

성소수자혐오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동성애혐오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성소수자에 따라 편견과 혐오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간성)에 대해 살펴보자.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생물학적 성별과는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며, 인터섹스(간성)은 출생 시 염색체나 생식기관 등 생물학적인 성특징들이 전형적인 여성이나 남성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나 성별표현이 사회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고정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미풍양속이나 풍기문란으로 처벌되기도 하였는데, 트랜스젠더가 종종 그 대상이 되곤 하였다.

트랜스젠더가 트랜스섹슈얼 혹은 성전환자로 불리며 동성애자와 구분되기 시작했던 것은 20세기 초로, 서구 정신의학에서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위화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고통을 받으며 다른 성별이기를 바라거나 주장하는 상태를 성전환증으로 진단하고 그 치료로서 소위 ‘성전환수술’(현재는 성별확정수술 등으로 불림)을 행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반면, 인터섹스의 경우는 성발달장애로 진단하며 조기에 전형적인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로 전환시키는 ‘정상화수술’이 행해졌다. 이와 같은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존재에 대한 가장 주요한 접근 방식은 병리적 관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성애혐오와 트랜스혐오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가부장적 사회규범에서 정상적인 인간은 ‘남성(여성)의 염색체·생식기 등을 가지고[성특징], 남성(여성)으로 자신을 인식하며[성별정체성], 남성(여성)으로서의 복장·행동거지 등 모습을 보이면서[성별표현], 여성(남성)에게 성적 이끌림을 가지는[성적지향] 사람’으로, 여기에서 벗어난 경우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공통적 점에서 공격받는다.

2 국내 성소수자 혐오 현상의 전개와 사례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소수자인권 운동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동성애자 인권운동도 등장하였으며 사회에 그 존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에도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의 행사 포스터나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동성애자가 등장하는 드라마 시청 거부 광고가 신문에 실리는 등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성애를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매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신촌 지하철의 광고판이 찢겨지고,³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기사에서 동성애자를 부각시키는 기사⁴는 ‘동성애자=문란한 성생활=에이즈 확산’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3 ‘찢겨나간 광고판’이 보여준 ‘뿌리 깊은’ 성소수자 혐오(서울신문, 2020.8.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4500141>

4 한국기자협회, 혐오에 갇힌 국민일보의 성소수자 보도(2020.6.3.)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767

특히 2007년 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며 일부 보수 개신교 중심으로 ‘반동성애’ 단체들이 등장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조직적, 전방위적인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게시물을 비롯한 신문기사뿐 아니라, ‘탈동성애’ 문화행사에서 학술 세미나와 강연과 교육, 정당 설립과 정책 공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사와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막아서는 집단행동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매년의 행사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심각한 폭력에 이르러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남겼다.⁵ 대형교회나 교회 연합체에서 동성애 반대 예배를 진행하며 혐오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사와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⁶ 또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거나, 이미 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폐지를 주장하여 실제로 폐지된 사례도 있다.⁷

5 김채린, [취재후] “부모님이 널 낳은 걸 후회할 거야”...퀴어축제와 칼이 된 말들, (KBS, 2018.10.2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59006>

6 이찬민, 기독교 대학에서 성소수자로 살아남기, (뉴스앤조이, 2020.02.27.)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44>

7 김만권 외, ‘혐오의 정치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해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67면.

이러한 성소수자혐오가 비단 반동성애단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거리 행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행사장 대관을 거부하고 거리 게시대 현수막 설치를 불허하는 등의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책 계획에 성소수자를 삭제하거나, 균형법 추행죄 조항에 대해 “비정상적인 동성 사이의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적 지향성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3 인식의 확장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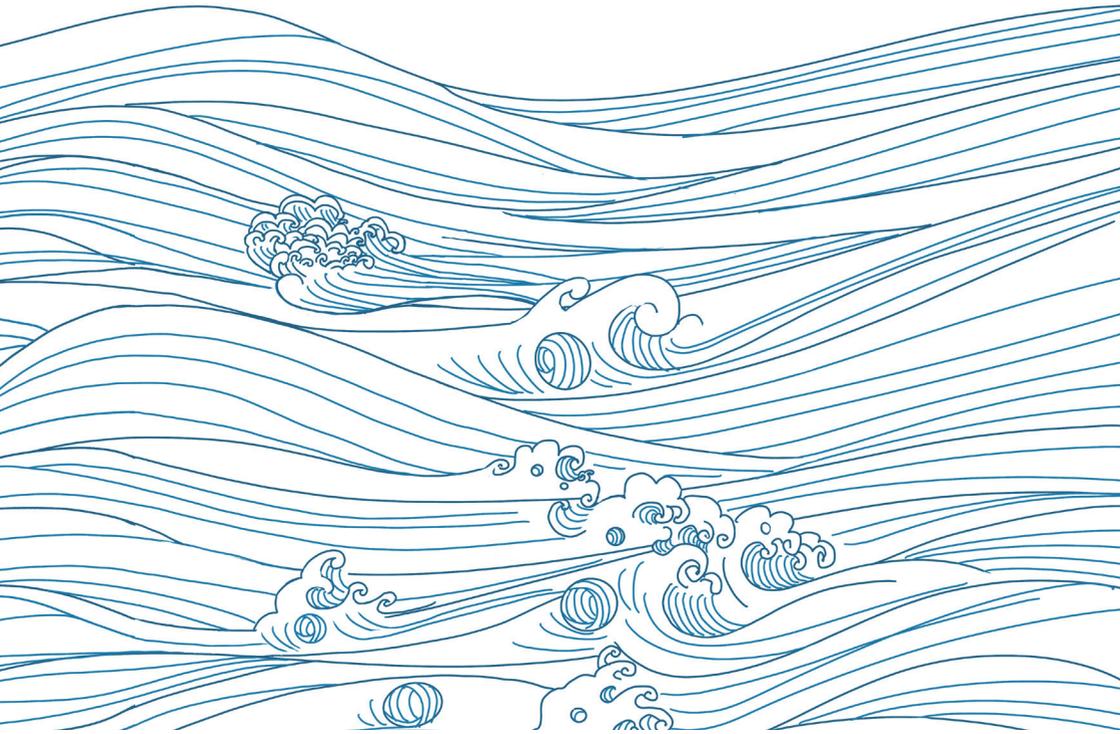
성소수자 혐오의 많은 부분은 잘못된 지식과 결부된 편견에서 온다. 성소수자에 대한 병리적 시선과 비윤리적 행위자로 취급하는 시선이 혐오를 발생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이러한 시선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과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는 주장이나 트랜스젠더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들고 있는 근거에 포함된 편향된 정보나 왜곡된 논리를 가려낼 수 있는 문해력(literacy)의 증진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시민 역량의 성장은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가지는 성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이며 그 중 소수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모습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자 문제를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문제로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남자니까 이래야 한다고 단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라든가, 나는 동성애자니까 다른 성소수자도 잘 알고 있다고 속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다양하게 성찰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별표현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온 경험이 있다. 과거 여성이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는 것이 어려운 도전이었던 시기도, 남성이 부엌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흥으로 취급되던 시기도 거쳐왔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함께 사는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적힌 성별과 다른 외모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비난이 되지 않는 사회도 멀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ISBN 979-11-7214-000-7 93330

발행일 2024. 1.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전화 02-2125-9940

디자인 강선제

그림 정우열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삼달신풍로22-17

전화 010.5693.4732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